「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공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가.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상용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.

나.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: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
나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4조, 제6조

다)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제15조

라)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

2) 필요성: 기업 발굴, 선정, 사업관리, 컨설팅,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·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,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 사무 내용: 구미형 TIP TOP 스타트업 육성사업 업무 전반

1)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

2)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

3) 멘토링 및 교육지원, 벤처투자협의회 운영

4) 선정기업과의 협약 체결・변경・해약

5)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・관리 등

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: 해당없음

마. 위탁기간: 2027. 1.~12.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: 2,500백만원(시비)

(단위: 백만원)

계	사업비	간접비	인건비	비고
2,500	1,850	250	400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: 적정 ※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'26.8.18.)

아. 위탁구분: 재계약 (수탁기관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: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,
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,
「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」 제15조,
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나. 예산조치: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

다.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※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

라.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, 감사결과: 안건 참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기간 단축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본 사업은 혁신 기술 보유 기업의 발굴부터 선정, 전문 컨설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깊이 있는 이해와 전문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, 풍부한 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본 동의안에 명시된 위탁사무 내용이 「구미시 New Venture 창업 지원사업」 동의안과 유사하므로, 각 사업의 지원 목적과 대상에 적합하도록 단계별로 사업내용에 명확한 차별성을 두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